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3. 06. 14. (수)	총 7페이지	담당자	권주리 사무국장 변호사/상담원
서울시 영등포구		http://www.teen-up.com		
전 화	02-6348-1318	전 송	02-2690-1255	teen-up.com@daum.net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행한 성착취 범죄자 “우쭈쭈(닉네임)”를 추적하여 수사하고, 각 혐의에 대하여 전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서울중앙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의 결정을 환영한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2023년 6월부터 KBS 시사기획 창과 공동으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 피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기획하는 과정에서, 섭외된 성인 배우를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13세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식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행한 익명의 남성인 “우쭈쭈(닉네임)”를 서울중앙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발하였습니다. 2023년 5월 16일 현재, 서울중앙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 범죄자 “우쭈쭈”에 대해 고발인이 고발한 모든 혐의를 검토하여 전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 구체적인 사건 경과, 고발 내용, 향후 계획 등을 아래와 같이 밝히오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어 취재도 해주시고, 보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사건 경과

1.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랜덤채팅앱 등 온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신뢰를 쌓고 호감을 얻은 뒤 신체 사진, 영상 또는 만남을 요구하는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KBS 시사기획 창과 공동으로 다큐멘터리를 기획·제작하여 2022년 8월 2일, 2022년 9월 20일, 2022년 10월 18일 총 3부에 걸쳐 보도하였다.

* 1부 ‘너를 사랑해-악마의 그루밍’ (2022. 8. 2.자)

http://www.teen-up.com/load.asp?sub_p=board/board&b_code=1&page=3&idx=3767&board_md=view

* 2부 ‘너를 사랑해-거미줄 그루밍’ (2022. 9. 20.자)

http://www.teen-up.com/load.asp?sub_p=board/board&b_code=1&page=2&idx=3792&board_md=view

* 3부 ‘너를 사랑해-여전히 그곳엔, 우쭈쭈’ (2022. 10. 18.자)

http://www.teen-up.com/load.asp?sub_p=board/board&b_code=1&page=2&idx=3804&board_md=view

2. KBS 시사기획 창은 2022년 6월경 성인 연기자를 섭외하여 랜덤채팅앱에 접속한 뒤 채팅을 걸어온 상대방에게 각 13살, 15살, 17살 미성년자라고 소개했고, 그중 “우쭈쭈”는 채팅을 시작하자마자 일방적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던 대화 상대방이 6학년에 재학 중인 13세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동·청소년의 대화 수준에 맞춰 성착취 목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고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였다.

3.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우쭈쭈”의 범행 수법이 전형적인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해당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에서의 대화 상대방이 실제로는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한 이상 그 상대방에 대하여 용돈을 줄 테니 신체 사진 등을 찍어 보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는 행위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녹취록 등을 증거로 “우쭈쭈”를 고발하였다.

○ 고발취지

랜덤채팅앱은 미성년자의 가입을 허용하면서도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대화를 제한하지 않는다. 가입 연령을 규제하는 관련 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성인들은 랜덤채팅앱을 통해 얼마든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전송하거나 받으며, 성적 목적의 대화를 즐길 수 있다.

이에 국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이라고 함)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범죄로 규정하고(동법 제 15조의 2), 나아가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를 예방할 목적 하에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신분을 비공개하여 랜덤채팅앱 등 범죄현장에서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두었다(동법 제25조의 2). 즉 현행 ‘아청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나 자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행위자가 위장수사에 투입된 경찰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고 온라인 그루밍을 목적으로 접근하여 검거하더라도 실제로 성인인 경찰이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한 것이어서 불능범(불능미수)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데, ‘아청법’ 제15조의 2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처벌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위장수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위장수사를 통해 검거하더라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또 다른 가해자들은 여전히 범망을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를 행하고 있고 그 수법은 더욱 악랄해지고 교묘해져 그 피해가 이전보다 결코 덜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법이 바뀌었음에도 아동·청소년들이 처하여 있는 현실이 전혀 변화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알리고, “우쭈쭈”와 같이 랜덤채팅앱에서 익명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가해자들 사이에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라인 앱 등으로 대화를 나누더라도 수사기관에 의해 신원이 특정되어 반드시 처벌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우쭈쭈”를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 고발내용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배수진, 김수현, 김병희, 김현아, 최은미, 추선희, 한욱 변호사)들은 ‘아청법’ 제15조의 2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입법상 미비로 인해 형법 및 특별법상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면밀히 살펴 “우쭈쭈” 를 처벌할 수 있는 모든 혐의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을 특정하였다.

1.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한 자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속여 자위행위를 하게 한 행위(적용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7조 제5항, 제3항, 제15조, 형법 제27조)

‘우쭈쭈’ 는 랜덤채팅 대화가 연결되자마자 자신의 성기사진을 보냈고, 대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만 12세, 이하 ‘피해아동’ 이라고 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저씨가 좋아 싫어? 아저씨가 용돈 주고 싶은데, 용돈 받고 싶지 너 솔직하게”, “용돈 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아저씨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 해봐봐” 라는 등 피해아동의 집 인근에 방을 얻어서 용돈 30만 원을 둘 테니 언제든지 필요하면 가져가서 사용하라고 피해아동을 용돈으로 유인하며, “사귀자고 그랬으니까 아저씨는 솔직하게 너 가슴이랑 보○(성기 지칭)도 보고 싶다”, “원래 어른들은 사랑하면 키스도 하고 섹○(성행위를 지칭)도 하고 가슴도 빨아주고 보○도 빨아주고 다 하거든”, “너 클리토리스도 나왔지. 지금 손 한 번 넣어 봐봐. 팬티 안에 넣어봐봐” 라고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성적 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말로 아동·청소년을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하여 피해아동의 성기에 손을 넣어보라는 등 피해아동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하게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아동이 성인 여성이므로 불능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한 자에게 신체 일부를 촬영하여 전송하게 한 행위(적용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6항, 형법 제27조)

‘우쭈쭈’ 는 피해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했고 그때마다 피해아동이 “무섭다”, “싫다”, “나이가 13살이다” 라고 거부 의사를 표하였음에도 일방

적으로 “아저씨가 너 입에 아저씨 좃ㅁ(사정을 의미) 싸주는 생각 했어”, “아저씨 만나서 너 보○ 빨면 어떻게 해?”, “아저씨 자○(성기 지칭)로 너 보○에 넣잖아”, “어차피 만나면 아저씨가 너 보○ 볼 텐데 만나서 볼까?”, “사진으로 팬티까지 보여줄 수 있어?”, “그러지 말고 화장실에 가서 위에 얼굴은 가리고 위에 하고 밑에만 보여줘 옷 입은 거” 라는 등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고 이를 직접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아동이 성인 여성이므로 불능미수에 그쳤다.

3.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한 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받게 한 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행위(적용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4항, 형법 제27조)

‘우쭈쭈’는 피해아동에게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낸 뒤 “근데 아저씨가 너한테 용돈을 좀 주려면 보기는 봐야될 것 같은데”, “너 집 부근에다가 아저씨가 방을 하나 얻으면 니가 거기 와서 돈을 가지고 가고 그냥 쓰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만나면 돼, 한 달에 한 번만 보고 아저씨가 이제 아저씨 집에 돈을 냅두면 니가 가서 돈만 가지고 이제 가면 되는 거야 아저씨 없을 때” 라고 하면서 용돈을 대가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아동이 성인 여성이므로 불능미수에 그쳤다.

4.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한 자에게 성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한 행위(적용법률,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항, 제294조, 제27조)

‘우쭈쭈’는 피해아동에게 “아저씨도 만나면 키스할 것 같은데”, “만나면 뭐 할 건지 잘 몰라? 아저씨는 너 보○하고 볼 건데”, “섹○는 안 할게 그건 안 할테니까 그냥 아저씨가 가슴하고 보○는 보고 싶거든” 이라고 하면서 “솔직하게 너하고 아저씨하고 안 만나면은 아저씨가 너한테 용돈을 못 줘. 줄 수가 없어” 라며 성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아동을 약취, 유인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거절하여 장애미수에 그쳤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우쭈쭈”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미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미수, 추행약취·유인미수 또는 성적착취약취·유인미수죄로 고발하였고, 서울중앙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우쭈쭈”의 신원을 추적하여 수사한 결과 각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해 전부 기소의견으로 위 고발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 향후 계획

1. 본 고발사건에 대하여 향후 검찰 수사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보도자료 배포

성착취 범죄자 “우쭈쭈”는 채팅 중 “아저씨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는 무조건 비밀로 해야 돼”, “아저씨 만약에 너하고 이런 관계 들키면 아저씨 잡혀간다”, “그냥 밖으로 나가 버려(채팅 어플을 의미) 그냥 방 나가면은 너랑 아저씨랑 통화한 거 안 남잖아” 라고 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우쭈쭈”는 자신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하에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목적의 대화에 지속·반복적으로 참여시킨 것이다.

이제 기소여부는 검찰에게 달렸다. 고발된 모든 혐의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본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검찰이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고 위계에 빠뜨리고 있다는 의도를 여실히 보여준 “우쭈쭈”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검찰의 무능과 한계를 성착취 범죄자들에게 스스로 드러내는 것과 다름없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본 고발사건을 송치받은 대구지방검찰청 담당 검사가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실태와 중대성을 고려하여 “우쭈쭈”를 엄중히 수사하고 반드시 기소하여 법정에 세울 것을 기대하며 검찰의 처분을 지켜볼 것이고, 본 고발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적극적인 위장 수사를 행함으로써 성착취 범죄자들을 검거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2.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범죄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 입법 촉구

피해자는 성인 배우이고 13세 미성년자를 연기하였으므로 실제 아동·청소년과 같은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성인 연기자인 피해자 역시 촬영 과정에서 “우쭈쭈”가 행한 자극적인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지속·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 수치심을 느꼈고, 대화 상대방이 실제로 성인이었기 때문에 “우쭈쭈”의 온라인 그루밍 범행이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었던 것이지 만약 그 대상이 실제로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온라인 그루밍 범죄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의 예방을 위해, 행위자가 위장수사에 투입된 경찰 등 성인을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고 성착취 목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경우, 아청법 제15조의2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입법 제정을 촉구하며, 본 센터도 성착취로 인해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끝>

*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과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온·오프라인 아웃리치, 아동·청소년/사이버/성착취(성매매 등) 관련 이슈 생산과 연대활동, 아동·청소년 성착취(성매매 등) 방지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연대 등 성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